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인회계사 직무범위 명확화 등 〉

■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99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 신설	3
2. 공인회계사 직무범위 명확화 등	7
3.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 결격기간 단축	18
4. 손해배상준비금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대체 근거 마련	21
5. 공인회계사 징계 소속 감사인 통보	2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18.
3. 회 부 일 : 2025.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비교하였을 때 법적 사명을 명시한 규정이 없음. 직무범위에 있어서도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세무대리 등으로 나열하고 있고, 이러한 공인회계사의 직무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가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되어 일반 국민이 명확히 이해하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자격 없는 자가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다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비자격자라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 수행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또한,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등록취소된 공인회계사는 현행법에 따라 5년간 업무수행이 금지되나, 세무사의 경우는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가 되어도 3년간 업무수행이 금지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다른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에서는 손해배상준비금과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하여 현행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같은 대체 방안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 중 감사와 증명 업무나 세무대리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사와 증명 등의 고유업무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수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회계에 대한 감사, 증명 업무의 공공재적 성격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세무사법」과 동일하게 징계에 따른 업무 금지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며, 회계법인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인회계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인회계사가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감사인에게도 징계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법령 간 형평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과 위촉인의 신뢰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4조제7호 신설 및 제50조).

Ⅲ. 검토의견

1.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 신설

- 개정안은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로서 국민 권익 보호,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으로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조의2(공인회계사의 사명) 공인회계사는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 공인회계사는 공적인 성격의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윤리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사명이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반면,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다른 자격사의 경우 근거법률에서 해당 자격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음.

[표1] 타 자격사의 법적 사명 조항

근거법	법적 사명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관세사법」	제1조의2(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 개정안은 다른 자격사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법」에 공인회계사의 사명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회계감사, 세무대리 등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¹⁾과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라는 공공적 성격²⁾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전문자격사의 사명 조항은 다른 자격사의 경우에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있고,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 조항 신설을 통하여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보임.

1)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만, 개정안에서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찬반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법률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를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로서 국민 권익 보호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공인회계사의 사명으로 규정한 것은 다른 자격사법의 사례와 같이 법적 사명의 명기를 통하여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 기획재정부는 공인회계사 사명조항에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표현한 것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20조³⁾와 충돌할 우려가 있으며, 세무사 시험과목, 연수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 전문가라는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이해관계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현행법(「공인회계사법」 등⁴⁾)

3)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4) 「국세기본법」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상 공인회계사의 세무전문가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어 있고, 개정안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직무에 관한 사명을 신설하는 것이며, 연혁상 세무사보다 공인회계사가 먼저 세무전문가로 직무를 수행해 왔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를 세무전문가라고 명시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1조의2⁵⁾와 충돌하고, 세무사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전문분야를 구분하여 세무사를 세무 전문가로 공인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납세관리인)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5) 「세무사법」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2. 공인회계사 직무범위 명확화 등

- 개정안은 ①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검토, 검증, 검사, 확인 등 위촉인과 독립적 지위에서 수행하는 인증업무로 정의하고, ② 세무대리를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로 하는 등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안 제2조),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예외 없이 회계 관련 감사·증명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第2條(職務範圍) 公認會計士는 他人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1. 會計에 관한 監査・鑑定・證明・計算・ 정리・立案 또는 法人設立등에 관한 會計 2. 稅務代理 3. 第1號 및 第2號에 附帶되는 業務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각 호의 직무를-----. 1.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검토, 검증, 검사, 확인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하는 인증업무를 말한다) 2. 회계에 관한 감정·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3.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부대되는 업무
第50條(業務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會計法人이 아닌 者는 다른 法律에 規定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0조(업무의 제한) ----- -----회계법인이-----자는 제2조의 직무를-----다

현행	개정안
第2條의 職務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2조 제1호 외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명확화 등

□ 현행법에서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2조⁶⁾),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아닌 자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50조 및 제54조제1항⁷⁾).

○ 그런데, 이러한 직무범위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자격이 없는 자가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⁸⁾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6)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7) 「공인회계사법」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벌칙) ①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부산광역시 D단체의 손익결산에 대한 결산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23고정741)에 불복하여 기업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된 회계에 대한 감사·증명은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회계정보를 검증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를 말하고, 법정 감사와 임의 감사를 포함하므로 피감 대상자가 반드시 기업제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공인회계사의 직무 수행을 허용하는 포괄적 예외규정(제50조)으로 인하여 공인회계사 고유직무가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⁹⁾

- 참고로, 세무사¹⁰⁾, 공인노무사¹¹⁾, 관세사¹²⁾의 경우 타법에서 규정한 경우 업무 제한에 예외를 두고 있으며, 변호사¹³⁾, 변리사¹⁴⁾, 감정평가사¹⁵⁾, 법무사¹⁶⁾의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개정안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세무대리를 「세무사법」 제2조¹⁷⁾에 따른 세무대리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라고 관시한 바 있음(부산지방법원 2023노4714 참조).

9) 비자격자라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 수행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출처: 동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관세사법」

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14)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

16) 「법무사법」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의 경우에는 비공인회계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개정안 제2조제1호 및 제50조는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검토, 검증, 검사, 확인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위촉인과 독립적 지위에서 수행하는 모든 인증업무로 규정하면서, 이 업무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예외 없이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에 한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를 해소하는 한편, 이 업무를 오직 공인회계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공공재적 성격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이를 검토하면, 개정안의 “검토¹⁸⁾, 검증¹⁹⁾, 검사²⁰⁾, 확인²¹⁾”은 공인

17)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③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사나 회계법인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이 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하는 인
증업무”는 해당 직무가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서도, 위촉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타인이 작성한 회계
기록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업무의 전문적·공적 성격을 반영한 것
으로 이해됨.

- 다만,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라는 법문상 표현은 직무범위의 명확

2. 분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제24조제2호 단서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20)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5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② 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비친족측계열회사·친족측계열회사 또는 비임원측계열회사·임원측계열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2. 제1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현황에 관한 서류

4. 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의 거래내역에 관한 서류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5호가목1)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려는 이해관계자는 같은 목 1)에 따른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 현황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오히려 그 명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전문자격사 직무의 근거규정에서 이와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 제50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관련 감사·증명업무를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업무에 대한 자격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다른 법률에서 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법률 간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²²⁾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진단 업무의 경우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이 업무는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음.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법률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먼저, 개정안 제2조제1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의 범위를 보다 명확화한다는 점에서

2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적절하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무사회는 ‘검증’ 등의 경우 개별법의 필요에 따라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격사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인회계사 고유 업무로 지정하는 것은 업역 간의 이해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검증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한 것을 「공인회계사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²³⁾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개정안 제50조와 관련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업무로서 고도의 전문성, 윤리성 및 엄중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보다 엄격하게 자격제도가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세무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현재에도 이미 다른 법률에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가 다른 전문자격사에게 허용되고 있어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23)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그 업무내용을 세무사 등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대한 검사 정도로 정하겠다는 것으로, 반드시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거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이 이 사건 조례안의 개정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중략)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반드시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거쳐야 한다고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 (중략)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을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외에도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으로 확대한 것은 시장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또는 수탁기관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엄격한 회계에 의한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간이한 결산서 검사를 받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02추5125)

나. 세무대리 명확화

□ 현행법 제2조제2호는 공인회계사의 직무 중 하나로 세무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에 개정안은 세무대리를 「세무사법」 제2조²⁴⁾에 따른 세무대리로 명시함으로써 공인회계사 직무범위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현행 세무대리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 1950년 제정된 「계리사법」(現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된 “세납사정에 대한 이의신청”²⁵⁾은 1960년 법률 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²⁶⁾이라는 용어로 변경²⁷⁾되었음.

24)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25) 「계리사법」 [법률 제112호, 1950. 3. 10, 제정]

제1조 계리사는 회계에 관한 검사, 조사, 감정,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세납사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을 직무로 한다.

26) 「계리사법」 [법률 제541호, 1960. 2. 1, 일부개정]

제1조 계리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검사, 조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함을 그 직무로 한다.

27) 계리사의 사무를 ‘세납사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박찬현 의원** 정부에서 제출한 계리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략) 그다음 현행법에는 ‘납세사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음

- 이후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되었으나 세무사의 직무를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이의신청 기타사항의 대리 및 상담”으로 규정²⁸⁾하였으며,
- 1989년 법률 개정으로 세무사 직무에 세무조정, 기장 대행 등을 추가하면서 이를 “세무대리”로 정의²⁹⁾하였음.
- 또한, 동일한 세무대리행위에 대해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 등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가 세무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³⁰⁾하도록 하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 안에서 보수, 징계 등에 관하여 동일한 규정을 적용³¹⁾하도록 하였음.³²⁾

니다마는 이것을 좀 광범위하게 ‘세무대리’라고 해서 이것을 수정을 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계리사가 취급하는 이 연관성 있는 그 각종 세무사무는 이 비단 납세사정에 대한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국세에 대한 신고라든지 혹은 과오납세에 대한 환부신청이라든지 또 심사의 참고라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그 납세자와 정부의 중간에 개재해 가지고 소위 이 납세제도를 확립한다고 하는 이런 처지에 있으므로 해 가지고 비단 납세사정에 대한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이것을 총괄해서 ‘세무대리’라 이것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자료: 제33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1960. 1. 15.)

28) 「세무사법」 [법률 제712호, 1961. 9. 9, 제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의무자의 위촉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이의신청 기타 사항(소송을 제외한다)의 대리 및 상담을 함을 그 직무로 한다.

29) 「세무사법」 [법률 제4166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30) 「세무사법」 부칙 [법률 제4166호, 1989. 12. 30, 일부개정]

③(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후에도 그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31) 「세무사법」 [법률 제4166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20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에 대

[표2] 세무대리 제도의 주요 연혁

구 분	내 용
1950. 3.	○ 「계리사법」 제정 - 공인회계사 직무에 “ <u>세납사정에 대한 이의신청</u> ”으로 명시
1960. 2.	○ 「계리사법」 개정 - 공인회계사 직무를 “ <u>세무대리</u> ”로 수정
1961. 9.	○ 「세무사법」 제정 - 세무사의 직무를 “ <u>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이의신청 기타사항의 대리와 상담</u> ”으로 규정
1989. 12.	○ 「세무사법」 개정 - 세무사 직무에 세무조정, 기장 대행 등을 추가하면서 이를 “ <u>세무대리</u> ”로 정의 -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 등에 따라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해 무대리 업무의 범위에서 「세무사법」 적용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연혁적 배경을 바탕으로 「공인회계사법」 상의 세무대리를 「세무사법」 상 세무대리로 명기함으로써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찬반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법률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자격사의 운영, 목적, 전문성 등이 상이하므로 공인회계사에 게 세무대리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하여는 당해 업무의 범위안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재무위원회,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89. 12.

- 이해관계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상의 세무대리는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대리와 연혁상, 해석상 동일업무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인 반면,
- 한국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법」상 세무대리는 세납사정에 대한 이의신청일 뿐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되었고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게 되면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이 아닌 「공인회계사법」의 직무규정에 의하여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재정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33) 한국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법」상 ‘세무대리’라는 용어는 1950년에 제정된 「계리사법」의 “세납사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1960년 「계리사법」 개정으로 ‘세무대리’로 개정된 것이므로 「공인회계사법」상의 세무대리는 “세납사정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의미할 뿐이라는 입장임. 또한, 1961년 제정된 「세무사법」은 「계리사법」상 세무대리가 있었음에도 세무사의 직무에 세무대리를 규정하지 않았고, 이후 1989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 외에 세무조정, 기장 대행 등이 추가되면서 이를 포괄하여 세무대리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법률 개정 연혁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법」상 ‘세무대리’ 조항은 과거 “세납사정에 대한 이의신청(이의신청)”을 의한 것일 뿐이고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입장임.

3.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 결격기간 단축

□ 개정안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법」에 따른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호 및 제7호).

현 행	개 정 안
第4條(缺格事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公認會計士가 될 수 없다. 1. ~ 5. (생략) 6. <u>彈劾 또는 懲戒處분에 의하여 罷免 또는 解任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懲戒에 의하여 除名 또는 登録取消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u> <u><신 설></u>	第4條(缺格事由) ----- ----- ----- 1. ~ 5. (현행과 같음) 6. <u>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 7. <u>「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3년(「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호에 따라 등록취소된 사람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

□ 현행법³⁴⁾ 제4조제6호에서는 공인회계사가 이 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

34) 「공인회계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로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등록취소된 경우와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각각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세무사법」 제4조제5호³⁵⁾는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라는 동일한 사유로 등록취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의 결격기간(5년)이 세무사의 결격기간(3년)보다 더 길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경우의 결격사유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동일한 위반사유에 대한 불이익을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간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5)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만,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에 따른 결격기간을 비교하면, 유사한 결격사유에 대하여 세무사에 비해 공인회계사에게 상대적으로 더 긴 결격기간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사에 비해 공인회계사에 대해 더 엄격한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공인회계사가 세무사에 비해 더 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가이므로 이에 비례하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인회계사의 결격기간을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표3]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결격기간 비교

구 분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5년	3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2년	1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유예기간 중	유예기간 중
탄핵 또는 징계처분로 파면·해임	5년	3년
「세무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로 제명·등록취소	5년	3년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로 제명·등록취소	5년	3년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제명·등록취소	—	3년

□ 따라서,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인한 제명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결격기간을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목적과 공인회계사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현행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손해배상준비금의 손해배상책임보험 대체 근거 마련

□ 개정안은 회계법인이 매 사업연도마다 적립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第28條(損害賠償準備金) ① 會計法人은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는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의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 事業年度마다 損害賠償準備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準備金은 金融위원회의 승인없이 損害賠償외의 다른 用途에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회계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행법은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의 직무 수행 중 발생시킨 위촉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법 제28조³⁶⁾).

- 준비금은 매 사업연도마다 당해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2%를 최근 3개 사업연도 총매출액 평균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적립하여야 함.³⁷⁾

□ 반면, 「변호사법」, 「세무사법」 등에서는 각각의 전문자격사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이 스스로 준비금 적립이나 책임보험 가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³⁸⁾

36) 「공인회계사법」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① 회계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다가 발생시킨 위촉인(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한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한다)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37)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0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① 회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회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38) 「변호사법」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무사법」

제16조의7(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리사법」

제6조의18(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표4] 전문자격사법인별 손해배상책임 보장 장치 비교

	회계법인	법무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관세법인
손해배상준비금	○	○	○	○	○
손배배상책임보험	×	○	○	○	○
공제기금	×	○	×	×	×

□ 개정안은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위촉인을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입법목적을 유지하면서 회계법인이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타 전문자격사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등의 근거조항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리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세사법」

제17조의5(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관세법인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인회계사 징계 소속 감사인 통보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를 징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해당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감사인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9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회계법인·공인회계사, 해당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징계 시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³⁹⁾

□ 한편, 징계를 받은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감사인(회계법인, 감사반)⁴⁰⁾은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감사업무의 독립성 준수 여부 등을 위하여 소속 공인회계사의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개인의 징계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원회가 감사인에게 징계사실 및 그 사유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함.⁴¹⁾

□ 이에 개정안은 징계대상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감사인에게 통보할 수

39)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9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4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11